보도자료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확립
경제민주화 · 창조경제 구현

공정거래위원회 FAIR TRADE COMMISSION
나라살림 가치창조 조달청
중소기업청

2013년 12월 10일 (화) 배포

2013.12.11.(수)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2월 10일 낮 12시)

경쟁정책과장 김재신 (044- 200- 4300)
사무관 전영재 (044- 200- 4303)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박영태 (070- 4056- 7108)
사무관 이병권 (070- 4056- 7445)
동반성장지원과장 이대건 (042- 481- 8957)
사무관 편장범 (042- 481- 3979)

고발요청제 운영을 위한 3개 기관 협약 체결

- 자료공유 및 협의체 설치 등 공정위 · 조달청 · 중기청간 협업체계 구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와 **조달청**(청장 민형종),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난 6월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등의 개정으로 도입된 고발요청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 이에 따라 조달청과 중기청은 **고발요청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공정위로부터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 · 조정하기 위해 **3개 기관 협의체**도 발족하였음.

< 참고: 고발요청제 주요 내용 >

-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법위반 사건에 대해 감사원장 · 조달청장 · 중기청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는 제도 (공정거래법 제71조 등)
- 동 제도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등 5개 법률에 도입되어 내년 1.17.부터 시행될 예정 (단, 가맹사업법은 2.14.부터 시행)

※ 고발요청기관 중 감사원은 법률상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 등을 감안하여 이번 협약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고발요청기관의 하나로서 독자적으로 소임을 다할 것임

□ **협약 주요내용**

① 고발요청 등에 있어서 **각 기관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고 이 협약에 따라 **적극 협력**한다는 기본원칙을 규정(제2조)

② 조달청 및 중기청이 공정거래 위반사건의 조치결과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정위에 사건처리결과 통지의무**를 부여(제3조)

- 중기청에는 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 위반사건, 조달청에는 공공기관 발주사업과 관련된 담합사건을 각각 통지하게 됨

③ 조달청 및 중기청은 원칙적으로 공정위로부터 사건처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고발요청 여부**를 결정(제4조)

④ 조달청 및 중기청은 고발요청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음(제5조)

- 공정위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정거래법 제62조(비밀엄수의 의무)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공함

⑤ 공정위는 고발요청을 받은 경우 **검찰총장에게 즉시 고발**함(제6조)

⑥ 고발요청제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상시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해 **3개 기관 협의체**를 설치·운영(제7조 및 제8조)

- 협의체는 각 기관의 부기관장*으로 구성하며, 협의체는 협의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 공정위 부위원장, 조달청 차장 및 중기청 차장 (간사는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새로 도입된 **고발요청제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한편, 행정기관 간 **자료공유 및 신속한 고발요청 여부 판단** 등을 통해 **불필요한 기업부담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함

[첨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의 고발요청 및 고발에 관한 업무협약

조달청, 중소기업청(이하 함께 칭하는 경우 "양 기관"이라 한다)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의 고발요청 및 고발 관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협약의 목적】 이 협약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의 고발요청 및 고발 관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양 기관과 공정위 간 협력의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의 범위 및 원칙】 양 기관과 공정위는 다음 각 호의 법률 위반행위와 관련된 고발요청 및 고발 관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 기관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며,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 2 장 고발요청제도의 운영

제3조【공정위의 사건 조치결과 통지】 ①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이하 5개 법률을 함께 칭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등"이라 한다) 위반으로 조치하는 사건의 결과를 양 기관에 통지한다. 다만, 조달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위반행위 중 공공기관 발주사업과 관련된 사건의 결과에 한하여 통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방법과 내용에 따라 양 기관이 각각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발송한다.

1. 언론에 공개하는 사건의 경우: 조치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회의 및 소회의가 종료된 직후 사건의 주요내용, 관련 법률 규정 및 조치결과 등을 정리하여 통지
2. 언론에 공개하지 아니하는 사건의 경우: 공정위가 지정한 홈페이지에 의결서가 등록될 때, 의결서 등록사실과 열람방법을 통지

제4조【고발요청】 ① 양 기관의 장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건과 관련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와 그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중 공정거래법 제71조제4항, 하도급법 제32조제4항, 대규모유통업법 제42조제4항, 가맹사업법 제44조제4항, 표시광고법 제16조제3항에 근거하여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에 대하여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조달청장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71조제4항에 근거하여서만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양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위에 통지한다.

1. 고발요청 대상자
2. 고발을 요청하기로 결정한 근거
3. 고발요청 근거와 관련하여 양 기관이 각자 보유한 자료

③ 제1항에 따른 고발요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에 따른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한다.

④ 공정거래법 제53조에 따라 공정위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공정위는 해당 사실을 양 기관에게 통지하고, 재결 이후에도 재결 사실을 통지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통지방법은 제3조제2항의 방법을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양 기관이 이의신청 접수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재결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양 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고발요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자료요청】 ① 양 기관은 제4조에 따라 고발요청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특정하여 공정위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정위는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정거래법 제62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공한다.

제6조【공정위 위원장의 고발】 ① 공정위 위원장은 제4조에 따라 양 기관의 장이 고발을 요청한 자에 대하여 검찰총장에게 즉시 고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제22조의2에 따라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제 3 장 관계기관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제7조【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① 이 협약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체는 공정위 부위원장, 중소기업청 차장, 조달청 차장으로 구성하며 공정위 부위원장을 의장으로 한다.
③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으로 한다.

제8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제2장에 따른 고발요청 및 고발과 관련하여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이 협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기관 간 이견이 있는 사항
3. 기타 이 협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협의체는 제1항에 따른 협의·조정 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협약은 체결 즉시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장의 규정은 2014년 1월 17일 이후에 공정위가 최초로 의결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가맹사업법과 관련된 사항들은 2014년 2월 14일 이후에 공정위가 최초로 의결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2013. 12. 10.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달 청 장	중 소 기 업 청 장
노 대 래	민 형 종	한 정 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www.fcgo.kr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